

	<h1>산학협력위원회 규정</h1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7. 1.
		최종개정일자	2015. 4. 1.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의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과학대학교 학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과 산업체간의 교류 협력
2. 산학협력에 관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
3. 산학협력에 관한 대학 교육 참여(겸임교수, 시간강사, 특별강연 등)
4. 학생의 산업체 견학, 현장실습 및 취업
5.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
6. 교수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견학
7. 기술개발의 연구 및 산업기술의 정보 교환
8. 산학협력 기금 확보(장학금 · 연구비 등)
9. 그 밖의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4.1>

**제3조(구성)**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산학처장이 되고,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대학 전 임교원과 유관기관, 산업체, 연구소 및 공공단체의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.<개정 2015.4.1>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각 위원회 위원 중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 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 
②정기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.  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간사)**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  
②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산학처장이 선임하며,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<개정 2015.4.1>

**제8조(수당)** 임명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보고)** 각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기타 사항)**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(학과 산학협력위원회)** ①학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학과장이 되고,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, 대학 전임교원과 유관기관, 산업체, 연구소 및 공공단체의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.<개정 2015.4.1>  
②대학 산학협력위원회의 임기,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산학협력위원회의 규정에 준하여 운영 한다.

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